

## 화순군민제안조례안

### 심 사 보 고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 6. 20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6. 6. 22
- 다. 상정일자 : 96. 7. 1(제45회 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

####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정 부 응

나. 제안이유

- .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기회를 제 공하여 열린 행정을 적극 실현하기 위해 군정발전에 대한 군 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창안을 공모하여 군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군민제안 조례제정코자함.

다. 주요내용

- . 목적 : 군정발전 방안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행정 에 반영함으로써 능률 행정과 민주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군민제안에 관한 필요한 사항 규정
- . 제안자격 : 군내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적이 있는자나 본적 이 화순군인자
- . 제안의 범위 : - 군민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수 있는 시책 및 제도개선  
- 군정의 능률성 제고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 할수 있는 방안

- . 제안심사 기준 : 창의성, 실용성, 경제성,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등 부문별 기준에 대한 배점 규칙으로 정함.
- . 시상 및 제안장려
  - 군수는 창안자에 대해 채택될 경우 시상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재휴)

- . 본 조례개정안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창안을 공모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례로써,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 법령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4. 질의 답변 요지

“생략”

### 5. 토론요지

“생략”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첨부 : 화순군민제안조례

## 화순군민제안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6. 6. .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 1. 제안이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정발전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공모하여 군 행정에 반영하기 위함.

### 2. 재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15조

### 3. 주요골자

- 제안자격 (안 제3조)

군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적이 있는자와 본적이 화순군인 자

- 제안의 범위 (안 제6조)

1. 군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거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및 제도 개선
2. 군정의 능률성 제고와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3.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 제안 심사기준 (안 제8조)

창의성, 실용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등 심사기준에 의하여 결정

- 시상금 지급 (안 제9조)

군수는 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상 등급을 정하여 시상금을 지급한다.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 권리승계 (안 제10조)

군수는 창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 화순군민제안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방안에 대한 화순군민 (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공모하여 이를 화순군 (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에 반영 함으로써 능률 행정과 민주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군민 제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 이라 함은 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발전적인 군정시책과 제도개선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2. "창안" 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 라 함은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안자격) 군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적이 있는 자와 본적이 화순군인자는 누구나 자격이 있으며, 공동제안도 가능하다.

제4조 (제안의 종류) 제안은 자유제한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하되,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 선정을 자유로 하는 제안을 말하며, "지정제안"이라 함은 화순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 (제안시기)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지정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제안의 범위 및 내용) ① 제안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호의 1을 기준으로 한다.

1. 군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거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및 제도개선
2. 군정의 능률성 제고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3. 기타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② 일반적으로 공지된 사항등은 제안으로 볼 수 없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제안심사) 접수된 제안은 제1단계로 제안업무관련 실과에서 심사하고, 제1단계 심사에서 채택된 안건에 대해 제2단계로 화순군 군정조정위원회 (이하 "군정조정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사 확정한다.

제8조 (제안심사 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실용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기타 필요한 경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등에 의하여 창안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 (채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시상 및 제안의 장려) ① 군수는 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상등급을 구분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상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금 상
2. 은 상
3. 동 상
4. 장려상
5. 노력상

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창안이 예산절감 또는 세수증대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상금외에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9조 관련 【별표】 창안상여금지급기준표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국민제안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창안의 제명에 창안자 실명을 사용하는등 적당한 방법으로 창안자 실명을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 (권리의 승계) 군수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11조 (창안의 실시) 군수는 창안을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실시할 권한이 없는 창안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이송하고 그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창안상여금 지급 기준표

(별 표)

창안실시후 1년간 경비 절약액	상여금 지급 기준액
100만원 이하	경비절약액 × 30/100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경비절약액 - 100만원) × 20/100 + 30만원
1,000만원 초과	(경비절약액 - 1,000만원) × 10/100 + 210만원

비 고 : 상여금의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